12. 사용시설의 적정 저장설비 용량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 가. 시설기준
 - 2) 저장설비기준
 - 가)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

① 탱크로리 접속한 상태로 지속 공급 시 위법여부

질의

5톤 미만(2.4톤 소형저장탱크 2기) 저장설비에 15톤 탱크로리를 접속한 상태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설비를 가동할 경우 위법사항 해당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관할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허가관청에서는 저장소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규칙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되고, 특정사용자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전에 관할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9관련 제1호가목2)가)에 따라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최초 저장능력이 50톤인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타 법령에 의해 불허가 처리되어, 소형저장탱크에 15톤 탱크로리를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 1일 최대 사용량이 30톤 이상인 동업체가 사용량에 충분한 저장능력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탱크로리를 소형저장탱크에 장시간 접속한 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20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